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일괄정비로, 「수산자원관리법」 내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해당 기능이 「수산업법」 내 수산조정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 구성과 관련된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추가(영 제5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신설)

- 1) 「수산자원관리법」 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성격과 중복되는 성격의 위원을 제외하고,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규위원(4명)*을 중앙수산조정위원회 구성에 새로 포함함

- ①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②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임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 * 위원회 일괄정비로 수산조정위원회 신규위원으로 추가되는 정수를 반영하여 위원 정수를 19인에서 23인으로 개정 완료(법제97조, '23.10.31.)

나.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시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 1명 추가

1. 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 직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영 제59조 제2항 제1호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어업인 의견 조회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수산물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중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한국수산물자원공단의 임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6.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제5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인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u><신 설></u> <u><신 설></u> 1. ~ 3. (생략) <u><신 설></u> ② 시·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위원이 호선	제5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 ----- -----. 1. <u>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u> 2. <u>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임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u>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6. <u>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u> ② ----- ----- ----- ----- ----- -----

(互選)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소속 연구센터장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1명 2. ~ 5. (생략) ③ ~ ⑥ (생략)	----- ----- ----- ----- ----- ----- ----- ----- ----- ----- 1. <u>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인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u>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16